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 일시 : 2003년 1월 15일(수) 13:30~17:00
- 장소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개발학회
- 후원 : 충청남도, 지방분권운동대전 · 충남연대

세미나 일정

■ 등록 및 안내		13:00~13:30
■ 개회식		13:30~13:47
○ 국민의례		
○ 개회사	하성규 한국지역개발학회장	
○ 축사	김홍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격려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 기조연설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3:47~14:20
■ 휴식		14:20~14:30
■ 좌장 서두인사 및 토론자 소개		14:30~14:40
■ 주제발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14:40~15:30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책팀장)		
■ 종합토론		15:30-17:00
○ 좌장 : 고병호 (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곽태열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열 (대전일보 상무)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박양호 (국토연구원 실장)		
이경옥 (행자부 지역경제과장)		
안성호 (대전대학교 교수)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		
최민호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 폐회		

개 회 사

친애하는 심대평 충청남도지사님과 김홍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 그리고 각 시·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더욱 빛 내주신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계미년(癸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정부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할 2003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록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사회적 갈등 극복을 통한 국민 대화합 등 대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새정부에 대한 기대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과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1980년 3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46.3%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 금융, 재정, SOC, 생활편익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민간의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권력, 인력, 자금, 정보등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은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성장거점개발 정책과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제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지역간 편중에서 기인합니다. 산업의 지역간 편중은 지방재정력의 격차로 이어졌으며, 기반시설과 사회·문화적 편의시설의 지역간 격차로 이어지는 누진적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토 경쟁력의 약화, 교통혼잡 비용 상승, 환경오염 처리비용 상승, 수도권 난개발, 지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농촌의 폐해화 등의 국가적 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지방주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권한 및 수단이 지나치게 중앙집중화 되어 지역균형발전 관련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능력부분이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추진체계 확립이 미흡하고 투자 재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원들이 부처별로 분산 집행됨으로써 사업간 연계투자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치중하여 낙후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이전을 위한 재정 투자에도 인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발적인 분산화 유인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4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그 동안 연구한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지향점과 본 세미나가 갖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외 관계자 여러분 !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낡은 틀 안에서만 사고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지난여름 전국을 뒤덮은 붉은 물결의 열정을 이제는 국민 대화합과 국가 도약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 성별을 초월한 국민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구현함으로써,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할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에 전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온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아갑시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미나의 알찬 성과를 기대합니다. 희망과 도약의 계미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내내 함께 하고,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15일

한국지역개발학회장 하성규

축 사

존경하는 심대평 충청남도 지사님, 하성규 한국지역개발학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과 각 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여러분!

오늘 세미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갈등의 차원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나라의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국민적 자긍심도 매우 고양되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그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그 동안 연구한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공개적인 의견청취와 검증을 위한 세미나로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46.3%, 제조업의 55.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자금, 정보 및 유관기관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경제·사회적 집적효과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지가상승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지역간 격차에 따른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역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4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공과를 평가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단순히 국가가 지방에 대해 베푸는 시혜적 사업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참여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의 지방행정은 크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특성화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이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관료적 구조에서 분권적 참여적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엄격한 재정권 제한 등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정의존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양과 재정확충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지방적 실천·침투에 소극적이거나 주요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지역이기를 앞세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례가 표출되고 있습

6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수용해야 할 국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표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원리내지는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본질은 국가는 자치단체를 창설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권한이양에 수반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혜용받은 범위내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이에 수반되는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요구에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국가경쟁력강화와 국정의 통합성을 위하여 국가의 합당한 지도·감독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유리한 기능과 지방에 입지함으로써 유리한 기능을 분리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미나의 알찬 성과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 흥 래

격 려 사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열어 가는 계미년 새해를 맞아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지역개발학회 하성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우리 道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토의하고 보완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는 지난 4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편중개발과 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기회의 격차로 인하여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염려한다」고 가르치셨고, 마하트마 간디는 「민주주의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8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우리의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6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렇다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지어 볼 때, 최근 신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행정수도의 이전 추진과 NGO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과거 수도권 규제 문제로만 한정되었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지방분산과 자치역량 강화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1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가장 먼저 「지방분권 촉구선언」을 한 바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지방분권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의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상호 존중되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조정력 발휘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불균형과 불공정의 폐해를 시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제정된 이후 24차례나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경은 정부의 조정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오늘날 수도권의 과밀 집중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조정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논의가 결코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력, 경제력 등 모든 분야의 집중이 더 이상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내달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국가의 미래를 중심으로 걱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계미년 새해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축하와 격려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2003. 1. 15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3
제2장 지역간 불균형의 실태 및 전개과정	5
제1절 지역간 격차현황과 문제점	7
제2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	10
제3장 기존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평가	13
제1절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전개	15
제2절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평가	18
제3절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논쟁	22
제4절 개선과제	24
제4장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27
제1절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29
제2절 영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33
제3절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36
제5장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효율적 추진방안	39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패러다임 전환	41
제2절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42
제3절 지역균형발전의 세부추진방안	44
제4절 세부추진방안별 정부간 역할분담	77
제5절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80
<별첨>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9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를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3%, 제조업의 55%가 집중
- 그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의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지역격차 현황과 원인의 분석 및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외국사례연구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共存·相生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지역간 불균형성장 현황 분석

- 지역별 경제사회적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비교 분석
- 수도권집중과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의 원인 및 메커니즘 규명
-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폐해실태와 문제점 도출

□ 기존의 수도권 규제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각종 국가계획 및 관련 산업·재정·조세정책 등 검토
- 국가정책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친 영향 평가

-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쟁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논리 개발
-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상반된 논리의 비교 분석

□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검토

-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수도권규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등 검토
-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효율적 추진방안 도출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조직, 재원조달 등 추진체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연구

- 기 제안된 지역균형발전 관련법의 내용 검토 및 장단점 분석
-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제안

제2장

지역간 불균형의 실태 및 전개과정

제2장 지역간 불균형의 실태 및 전개과정

제1절 지역간 격차현황과 문제점

1. 수도권 집중 현황

- 2000년 현재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3%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산업, 금융, 재정, SOC, 생활편익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어 있음
- 특히 정부·민간의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련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
 - 전국 공공청사 84.8%와 중앙기관의 85%
 - 중앙행정기관 72.7%, 정부투자·출자기관 85%, 정부출연기관 69.8%
 - 100대기업 본사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 71.2%

2. 부문별 지역격차 현황

□ 인구

-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1980년 3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46.3%에 이른
- 수도권내에서 서울의 인구비중은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비중은 지속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전국의 인구증가분 가운데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비중은 1970년대에는 69.4%, 1980년대에는 88.5%, 1990년대에는 133.8%로 증가

□ 경제

- 생산, 소득, 고용, 금융 등 주요 경제활동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영남권이 전체 총량경제력의 27%, 충청권이 9%, 호남권이 8%, 강원·제주는 3%를 차지
- 지역총생산의 증가율을 보면 경기(11.14%), 충북(9.17%), 충남(8.58%), 경북(7.61%), 경남(7.04%) 등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강원(3.99%), 부산(3.47%), 대구(3.30%) 등의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수도권의 취업자수는 연평균 2.3%씩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0.9%씩 증가

□ 인적 자본

-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중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방대학은 갈수록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음
 -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수도권의 집중도는 2000년 현재 각각 61.0%와 56.8%를 차지하고, 연구조직의 수도권비중은 81.6%를 차지
- 정보불평등지수를 보면 대도시를 100으로 할 때 중소도시는 94.9, 읍·면 지역은 83.9의 수준에 머무름

□ 재정 및 금융

-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95.6%이나 광역시는 69.1%, 도는 34.6%, 시는 47.5%, 군은 19.1% 수준에 그침
 - 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2.1%로서 비수도권의 63.9%보다 무려 18.2%포인트 상회하고 있어 재정격차가 심함
- 지방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며, 2000년 현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37.3%가 서울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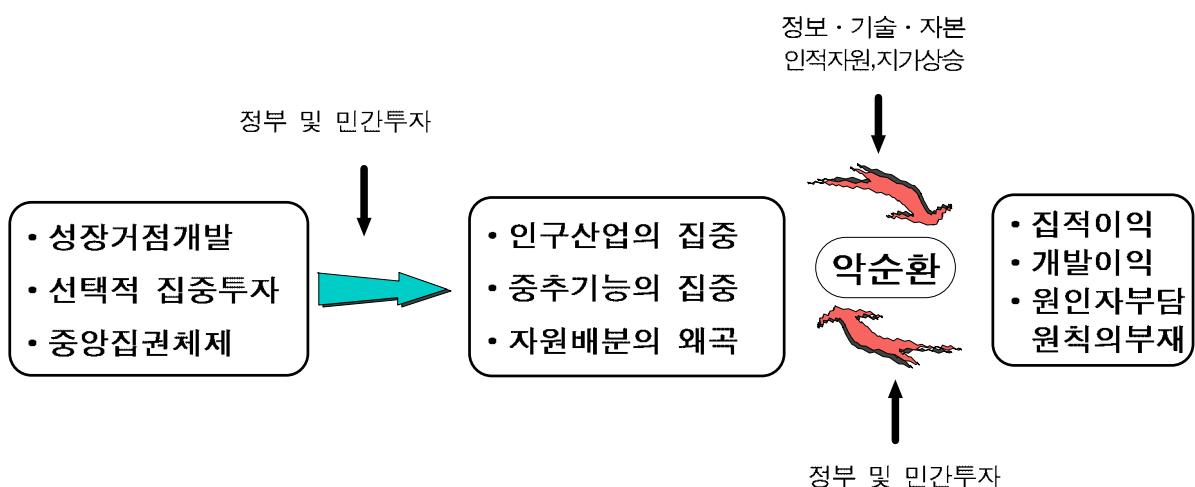
□ SOC 및 생활편의시설

- 도로 등 SOC도 서울~부산축과 여타 지역과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관련 시설은 수도권과 동남권에 편중
- 생활편의시설의 분포도 서울~부산 회랑지대에 입지한 지역과 여타 지역간에 격차가 심화
 - 서울~부산축에 유치원 58.6%, 초등학교 53%, 체육시설 63.4%, 문화시설 60%, 사회복지시설 51.9%, 의료시설 64%가 집중

3. 지역간 불균형성장 메커니즘

-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거점개발이론에 근거한 제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지역간 편중입지에 기인
- 산업의 지역간 편중으로 인한 지방재정력의 격차가 기반시설과 사회·문화적 편의시설의 지역간 격차를 초래하는 누진적 순환과정을 경험
- 지역간 격차는 대도시의 지가상승을 야기 시킴으로써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

〈그림 2-1〉 지역불균형성장 메커니즘



제2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

□ 국가경쟁력 약화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수도권의 과밀문제, 지방의 침체문제, 이로 인한 국토경쟁력의 약화현상을 초래
-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시책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의 마찰, 재원조달방안 부재, 국토의 난개발 등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

□ 산업단지 미분양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중 1/4이 넘는 산업단지가 미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분양비율은 2000년 12월 현재 22.7%에 달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미분양율은 높은 것은 비수도권의 고급인력의 부족 및 낮은 기술력, 정보능력의 부족, 각종 SOC의 불편 등 때문임

□ 교통혼잡비용의 상승

- 수도권의 도로교통혼잡비용은 서울이 52.9%, 인천이 15.0%, 경기가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혼잡비용증가율이 12.9%로 전국평균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혼잡비용이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상승

- 전국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33%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수도권이 32%를 배출하고 있고 그 중 64.6%가 경기도에서 발생
- 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은 전국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수송부문 비율은 78.5%로 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동차 공해성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임

□ 수도권 난개발

- 수도권내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아파트, 음식점, 무등록공장 등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로 및 상하수도 부족, 하천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루어진 1994년에서 1998년도에 2,500여개의 숙박업소, 17,000여개 음식점이 준농림지역에 난립
- 정부가 평가한 산림 및 농경지의 공익적 가치산정에 의하면, 1995년 기준으로 산림훼손에 따른 공익적 가치의 상실이 34조 6천여억원에 이를

□ 한계수용능력의 초과

- 환경용량을 고려할 때 서울과 수도권은 현재 초만원 상태이며, 서울은 1km²에 1만 8000명이 모여 살고 있음
- 서울시가 수용가능한 최대한의 인구는 800만명, 사업체수는 약 120만개, 주택수는 약 115만호, 차량대수는 170만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현 상태는 심각한 과밀수준임

□ 지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200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지가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이 5,638, 경기 198, 충남 46 등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평균지가는 강원도의 12배에 달해 도지역간의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집중은 지속적인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간접 개발비용과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
- 주택가격의 급상승은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파생하고, 투기심리적 영향으로 부동산투기가 조장되어 과다한 소유의 편중현상을 야기

□ 농촌의 폐폐화

- 2000년 현재 농촌인구는 12.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농촌 인구 비중의 감소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력이 있는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병행되어 농어촌 정주기반과 생산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농촌의 쇠퇴화를 가속화

제3장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평가**

제3장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평가

제1절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전개

1. 개요

- 체계적인 국토개발정책은 1970년대 이후부터 3차에 걸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각종 지역개발계획들이 시행되면서부터 출발
 - '60년대 이전에는 빈곤극복과 국토복구, '70년대는 성장의 추구, '80년대는 성장의 분배, '90년대는 세계화와 지역특성화를 기본전략 채택

〈표 3-1〉 지역개발 및 수도권정책의 전개과정

시대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추구이념	경제적 능률성	경제적 능률성	사회적 형평성	삶의 질
정책기조	빈곤극복 · 국토복구	성장의 추구	성장의 분배	세계화 · 지역특성화
경제개발 · 국토개발	1 · 2차 경제개발계획	3 · 4차 경제개발계획	5 · 6차 경제개발계획	신경제5개년 계획 7차 경제개발계획
		1차 국토개발계획	2차 국토개발계획 수정계획	3차 국토개발계획
개발전략	산업입지조성 · SOC 확충	대규모 성장거점개발 (4대권 8중권 17소권)	분산된 성장거점개발	광역거점개발 (7광역권, 9개 생활권)
			28생활권 4지역경제권	
지역 균형 입지	특정 지역	공업입지조성 · SOC 확충	관광자원개발	문화권개발 광역권개발 · 개발촉진지구
	산업입지	산업구조근대화 (공업단지 조성)	중화학공업기반 확충 (수출자유지역 설치)	공업의 지방분산 (지방공단 · 농공단지개발)
개발	농촌 개발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운동 면급도시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지방정주생활권계획
	낙후 지역	-	-	도서개발종합계획 오지개발종합계획
수 도 권 정 책	정책 변화	문제인식	정책형성	정책추진
	정책 수단	인구 · 산업집중억제	인구분산 · 재배치	수도권정비계획(권역규제)
	추진 시책	2차관서의 지방이양 공장신설 억제	지방대학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내 분산(5개 권역) 지역간분산(지방성장거점도시)
				총량규제 · 과밀부담금 규제완화

-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제적 능률성 위주의 하향식개발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과의 불균형성장으로 귀결
- 이러한 불균형성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산 및 다양한 공간적·비공간적 지역균형발전정책들을 추진
 - 지역균형발전 정책(성장거점개발, 광역개발권·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개발, 농어촌개발, 낙후지역개발, 산업입지정책 등)
 - 수도권정책(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수도권 권역구분과 행위규제 등)

2. 최근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 정책의 추진

□ 분권화정책의 추진

- '91년 총무처(현재 행정자치부)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구성되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이 시작됨
- '99년 8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2년 1월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확정된 사무 277개,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확정된 사무 2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된 사무 2개임

□ 분산정책의 추진

-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시책이 추진 중
 -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1998.8),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기계획수립(2001) 등

- 수도권분산촉진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선
 - 「특정지역제도」 도입,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2001),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2001, 2002) 등
- 수도권분산과 지방유입 촉진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시책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립(2002), 광역권개발계획수립 · 확정(1998-1999), 제3차도종합계획 수립(2001) 등

□ 분업정책의 추진

- 지역전략산업 육성 시책
 -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1999-2000), 3대권역별 전략산업육성계획(2001), 지방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시책 등
-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지방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기퇴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사후대응적 차원에서 개별부문별로 빈번하게 추진되었음
 - 주택경기활성화지원시책(1998-1999), 지방건설 · 유통업활성화대책(2000) 등

제2절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평가

1. 지역균형개발정책의 평가

□ 과도한 중앙집중에 의한 개발수단의 종속화

- 극심한 수도권 집중의 원인 중 하나는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 때문이며, 지역균형발전정책 또한 중앙주도-지방종속의 행·재정운영에 입각하여 하향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 개발권한 및 수단이 아직도 중앙집중화 되어 있고, 특히 지역균형발전 관련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능력이 매우 미약
-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결국, 행·재정권한의 중앙집중화는 수도권집중과 맞물려 지역불균형발전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미화립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추진 체계가 결여되어 중앙부처별 분산적 접근으로 정책집행의 시너지효과가 저감되고 있음
 - 현재 청와대 직속기구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있기는 하나, 중앙과 지방의 입장을 조정할만한 권한을 갖지 못한 채 법률적 기초가 없이 상설화 되지 못한 임의기구에 불과
- 광역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공동투자·공동개발 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며, 행정협의회도 제도적 한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의 개발투자 재원은 약 33조원 (2001년)에 달하고 있으나 부처별 분산 집행으로 사업간 연계 투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물리적지원 중심의 경제활성화 시책의 한계

- 지방경제활성화 지원시책이 도로, 항만 등 SOC 위주의 지원에 치중한 반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이 부처별 개별분산적으로 제공되어 패키지형태의 지원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2. 수도권 정책의 평가

□ 물리적규제 중심의 정비시책 및 지방의 수용여건 미구축으로 성과 미흡

- 수도권의 집적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나 지방의 수용여건은 경제활동을 유인하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못해, 수도권의 분산효과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수도권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키기에는 현재의 물리적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획일적인 집중억제와 분산정책으로 수도기능 수행능력 저하

- 획일적으로 시설을 분산하고 각종 중추·기반시설에 대한 입지가 규제되어 수도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짐으로써 수도기능 수행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수도권에 대한 경직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로 수도권내의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고 수도권자체의 편익성과 생산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물리적 규제시책의 경직성으로 시책 부작용 발생

-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무허가공장이나 분할개발 등의 편법이 빈발하거나 시설만의 분산으로 통학·통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 수도권 전지역에 대한 규제로 수도권내부의 지역간 격차문제가 대두되어 외곽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 소외와 지역경제의 낙후를 경험

□ 분산화와 지역균형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의지 부족

- 수도권 분산의 가장 큰 장애는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실천의지가 약화되고, 그 일관성이 수시로 상실되었기 때문임
- 한 쪽에서는 분산화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집중화를 유발하는 모순적인 정부의 정책과 실질적 내용이 없는 곁눈데기 분산화 정책은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저감시키는 가장 큰 이유임

□ 시장의 힘에 거슬리는 분산화 정책의 근본적 한계

- 분산화 정책의 한계는 시장의 힘에 편승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의 힘을 거슬리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감되었음
- 수도권은 ‘집적의 이익’이 언제나 ‘집적의 불이익’을 상회해왔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의 매력이 수도권 지역만큼 증가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변화 흐름인 세계화, 개방화, 경제의 지식산업화, 탈규제화 등의 거시적 흐름들이 수도권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힘이 시장의 힘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음

□ 유인과 재정투자 없는 분산화 정책의 한계

-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치중한 채, 낙후지역의 발전과 기업이전을 위한 재정 투자에는 인색한 조세감면 일변도의 단편적 지원체제였음
- 지방이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인프라, 금융, 인·허가, 인력 등을 망라하는 종합지원제도가 필요하지만 ‘토지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만으로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제3절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논쟁

□ 논쟁의 개요

- 수도권정책에 대한 논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하여 지방자치 실시와 1994년 대폭적인 법개정 이후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물리적 규제방식의 실효성이 미미한 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방의 규제강화론과 수도권의 규제완화론이 대립
 - 수도권의 적정규모
 - 수도권 집적경제
 - 개발의 효율성과 형평성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존폐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 과밀부담금 수도권 확대 적용
 - 접경지역의 수도권규제 제외
 - 지식정보산업의 수도권 입지 등

□ 논쟁의 종합

- 수도권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효율성과 계획경제논리에 의한 형평성의 문제로 요약
- 광역교통망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공간적 집적경제의 논리는 점점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음
- 민간투자가들은 직·간접으로 외부 불경제를 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어 외부 불경제를 내부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① 중단기적 으로 수도권규제를 유지·관리하되, ②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규제수단으 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
 - 수혜자 - 원인자부담 원칙, 토지공개념 관련제도 등 강화
- 지방분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에 앞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지방분산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즉, 공공기관의 선(先)지방이전 → 우수인력의 이전(우수인력의 지방유 입) →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 인구유입증가 → 기업의 지방이전 → 인구유입의 가속화

<표 3-2> 수도권관련 쟁점비교

구 분	규제완화론	규제강화론
심각성	· 문제없음	· 심각한 수준임
원 인	· 수도권규제정책 · 정부의 실패	· 수도권 집중 · 계획의 부재 · 시장실패
적정규모	· 수용능력 충분함	· 적정용량 초과
집적경제	· 집적경제 > 집적불경제	· 집적경제 < 집적불경제
효율성과 형평성	· 효율성 우선	· 형평성 우선
해결방안	· 시장메카니즘을 왜곡하는 불 필요한 정부개입이나 규제 철폐 ·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적 방법 · 지방자치에 의한 해결	· 시장실패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정책 이 필요 · 정부개입에 의한 해결 · 광역적 관리에 의한 해결

제4절 개선과제

1. 기본방향

□ 지역균형발전 기조의 전환

- 경제적 능률성 중심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능률성의 동시추구로 지역개발기조의 전환이 필요함
-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경제적 능률성에서 벗어나 지방성장거점도시 및 농촌거점중심지 개발에 투자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개발수단의 지방화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하향적 구조에서 지방분권적-상향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발수단이 지방화 함

□ 다핵다권형 국토공간구조 형성

- 서울 단핵중심의 수도권공간구조를 지양하고 서울권-외곽생활권, 수도권 - 지방대도시권 간에 중추관리기능이 분산, 연계되는 다핵다권형 연담공간구조를 형성함
- 이를 위해서는 중추관리기능이 지방분산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SOC의 분산투자가 시행되어야 함

2. 주요시책의 전개방향

□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공영: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의 추구

- 수도권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로 발전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핵심 성장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상생(win-win) 전략을 채택
- 지방의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수도권 입지규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은 그 재원을 자체의 성장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 비수도권지역에 일괄적인 규제완화가 가능한 산업입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예: 산업입지촉진지구제도(enterprise zone))

□ 개발수단의 지방화 및 정책평가 시스템의 도입

-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중심의 상향적 개발방식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지방이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및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수단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
 -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함으로써 지역의 책임성 제고와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간 조정 역할을 강화
-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왜곡된 수도권공간시장의 정상기능 회복

- 공장, 업무기능 등의 수도권 입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전가를 차단하여 무임승차에 의한 수도권집중 요인을 제거

-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현행 공공투자관행의 개선하고, 지역간의 공공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과 수익에 대하여 원인자 및 수익자의 비용부담원칙을 확립

□ 관련정책의 조화와 통합

- 지역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 및 정책들간의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정책추진 전략이 필요함
- 지역과 국토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정책 업무, 재원, 제도간 위계와 일치도를 결정

3. 장단기별 시책방향

□ 중·단기 시책개선 방향

- 수도권집중억제 및 분산시책의 기본골격 유지 및 보완
- 수도권 투자재분 및 정비체계의 효율화 방안 강구

□ 중·장기 시책개선 방향

- 수도권-지방간 다핵다권형 국토공간구조 형성 촉진
- 지역창발형 낙후지역 개발체제 구축 및 차등적 지원
-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투자실천계획의 수립
- 지역경제권 설정 및 지역협력계획의 도입

제4장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제4장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제1절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일드프랑스 레지옹’은 수도권으로서 파리를 포함한 8개의 데파르트망(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리시 중심부로부터 반경 약 110km의 권역을 말함
- 1999년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2.5%(12,012km²)인데 비해 전체 인구의 18.7%(1,095만명), 국민총생산의 29.1%, 공공연구기관의 55%, 연구원의 60%, 상급관리직의 40.6%, 증권시장의 96%, 대학정원의 19.7%, 500대 기업본사의 75% 등이 집중되어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교통, 환경, 주택, 에너지 등 과밀비용을 증가시키고 국토이용의 비효율을 야기한 반면, 지방은 산업의 침체와 고급인력의 부족 등으로 지역간 기회불균등과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유발

2. 정책대안

□ 지역개발 추진주체

- 중앙정부차원에서 1963년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수상직속기관인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을 설치
 - DATAR는 국토의 균형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결속을 목표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정책을 조정하고 국가정책과 지방차원에서 수행되는 개발사업간의 조정과 촉진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정책의 지역화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지방발전정책에 기여

- 수도권계획 및 관리는 분권화 이전에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1986년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후 일드프랑스 레지옹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정책 관련기구인 국토개발계획심의회, 지방분산위원회,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등에 지방대표가 참여함

□ 계획계약제

- 1984년부터 분권화계획의 새로운 수단으로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개발에 계획계약제가 적용됨으로써 계획의 분권화를 도모
- 수도권에도 국가와 레지옹(일드프랑스)간 계획계약이 체결·시행됨

□ 수도권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 건축허가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 1955년에 도입한 정책수단으로서, 파리수도권에 기업의 신설 및 확장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제도임
- 과밀부담금은 파리시 및 주변지역의 과밀지역에 산업 및 서비스업의 집중 억제와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제정됨
- 자연환경보전지역 정책은 농촌공간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도권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함
- 지역개발지원제도는 낙후지역에 입지 하는 기업의 신설, 확장, 전환 등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이전보조금, 조세감면 등을 부여
- 지역별 산업특성화전략에 의하여, 첨단산업지대, 산업전환지대 및 기업지구, 균형도시정책, 특정지역개발정책 등이 시행
- 지방이전관련 지원정책들로서 1955년에 만들어진 지역개발보조금제도는 창업, 고용창출, 파리로부터 이전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이며, 지

방분산보조기금은 수도권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과 고용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임

□ 투자재원 조달

- 1995년 국토정비 및 개발에 관한 기본법은 재정지원방법을 단순화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토계획기금(FRILE)을 신설하여 이제까지 분산되었던 기존의 6개 기금을 대체함
- 수도권코뮌간연대기금(FSCRIF)은 파리권 코뮌간 불균형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가장 부유한 코뮌 및 협력체의 조세수입에 대한 공제를 통하여 지원함
- 지역불균형시정기금(FCDR)은 레지옹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4가지 주요 지방세인 사업세, 주거세, 건축물토지세, 미건축물토지세의 세수입에 대한 공제에 의하여 지급

3. 정책의 시사점

- 프랑스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이 상생,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즉, 단순한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실질적인 지방의 발전정책을 통하여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쟁력 강화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줄이고 당위성 확보
- 수도권을 단순히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부인 파리시의 성장을 억제하되 국토공간 및 광역도시권의 관리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모색
- 프랑스의 수도권정책은 법제도의 신축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비현실적인 성장 목표와 논리를 수정하며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 및 계획계약(국가와 레지옹간)과의 연계를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

- 프랑스의 수도권정책은 부처간 이기주의를 벗어나,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조화하는 수상직속 상설 기구인 DATAR의 역할이 매우 컸던 바, 각종 기금 및 보조금 배분, 계획 수립의 지침 제시 및 협상 등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 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제2절 영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영국의 도시체계는 전형적인 '종주도시분포'로서 거대도시 런던 인근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함
 - 런던 인구만 730만이며,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1,900만에 이르는 인구가 30,000km² 정도 지역에 밀집
 - 특히, 지방 중소도시들보다도 지방의 대도시권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집중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지역불균형 문제의 특징임
- 런던의 제조업 비중(11%)은 전국 평균(21%)보다 낮은 반면, 금융·서비스 부문(38%)은 전국 평균(25%)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제재구조화 시기(1985~2000년)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1인당 GDP 격차가 여섯배로 확대

2. 정책대안

- 1998년 잉글랜드전역을 아홉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제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구들을 통폐합하여 지역개발청(RDA)을 설립하였으며 RDA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준정부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전략기획 기능에 특화해 사업결정권과 예산집행권을 행사함
 - RDA는 중앙의 인력을 투입하여, 민간리더쉽의 지휘 아래 지방정부 및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 특히, 파트너쉽을 강조하여 산업체, 지방정부, 주민조직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광범위한 토의, 협의 과정을 거쳐 발전전략을 수립함
 - RDA는 재무성에 대한 예산청구권을 가져, 독립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예산 지원시 각 사업별 지원이 아니라 총량 지원방식을 선택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중인 역점사업으로 기술재교육, 자금지원,

혁신장려, 창업지원 등의 사업이 있음

- 기술재교육 사업은 실업노동력을 재취업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재취업·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재교육
- 혁신장려 사업으로 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캠브리지 대학 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링(clustering)장려 정책을 시행
-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부가 등장한 이래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역의회가 도입되면서 RDA와 같은 지역별 계획기구들 또한 지역의회 산하기관으로 이양되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의회의 감독을 받음

3. 정책적 시사점

□ 지역균형발전의 키워드는 파트너쉽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파트너쉽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점점 더 ‘주도자’에서 ‘촉매자’로 바뀌고 있음
- 수직적 위계구조 보다는 수평적 파트너들 사이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계획의 정당성과 추진력이 길러져야 함

□ 지역정책의 현장성 강화 중시

- 지방분권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분산화 되어있던 지방정부의 권한을 광역화시켜 지역수준의 계획창구에 결집시켜야 함
- RDA 중심의 지역현황 파악(클러스터 지도화사업 등)은 이러한 현장성 강화의 한 방편으로 보아야 함
 - 지역정책 관련 정책결정권이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이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율,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RDA와 같은 지역거점기구가 있었기에 가능

□ 지방분권화 정책은 정치적 의지의 산물

- 지방분권화 정책은 강력한 리더쉽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영국의 최근 지방분권화 경험은 지방분권화가 반드시 혁명적일 필요는 없고 입법권, 조세권 등 분권화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도 부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함을 시사
- 영국에서는 지역별 주민투표를 통해 이런 지방분권화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함

□ 경제적 활성화에 클러스터의 역할이 필수적

-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내 유관산업 연계망의 구축이 필요하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은 클러스터의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곳을 찾아,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전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의 잠재력이 극대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때 클러스터의 핵심은 네트워킹임을 상기하여 전략 수립시 유·무형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함

제3절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수도권은 법률적으로는 1956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지칭하며, 동경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권역을 말하며 동경 도심에서 50km 범위를 근교정비지구라고 함
- 수도권 인구는 계속적으로 전국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 1995년 10월 현재 4,040만명으로 총인구의 32.2%이며, 면적은 전국토의 10%에 해당하는 약 36,800km²임
- 업무관리기능, 국제교류기능,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제조업 등 제 기능이 동경 도심부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추기능의 대부분이 동경도심부에 집중하는 등 동경 도심부의 집적이 현저함
- 동경권 시가지는 20세기 일본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나, 급속한 대규모 인구증가와 기능입지로 인하여 일극 집중구조를 형성하고 장시간 통근 등의 대도시 문제를 야기 시킴

2. 정책대안

□ 지역균형발전 정책

-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77년부터 시작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임
 - 여기에는 '제1차공업재배치계획'과 '테크노폴리스 계획' 등이 있음
- 제1차 공업재배치계획은 전 국토를 생산밀도에 따라 이전촉진지역, 유도지역, 백지지역 등 세 지역으로 구분
 - 이전촉진지역에서 유도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각

지역별 공업생산 할당 목표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임

- 1980년에 나타난 테크노폴리스 계획은 첨단기술과 대학, 연구소, 주택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도시계획임
-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은 동경권으로의 중추관리기능, 국제적 기능,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극분산형 국토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두뇌입지법, 지방거점도시정비법, 천도(수도기능이전)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1988년 두뇌입지법은 산업의 두뇌부분, 즉 연구소, 디자인, 소프트 개발 부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16 업종을 선정
 - 1992년 지방거점도시정비법은 지방분산대상을 공업뿐 아니라 오피스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거점지역으로 도도부현의 중소도시를 설정하여 도시정비와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 이전기업에게는 취득 건물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와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조치를 부여
 - 일본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수도기능 이전 논의가 있으나, 최근 후보지역의 경쟁과 동경도의 반대로 소강 상태임

□ 수도권 관리정책

- 일본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1956년에 수도권정비법이 성립되고 1958년에 제1차 수도권기본계획이 책정되면서 시작
 - 제1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는 동경도의 주변에 그린벨트지대를 설정하여,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학, 공장의 신·증설 억제
- 계획기간을 2015년까지로 설정한 제5차 수도권기본계획은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와 대도시 리노베이션을 주요내용으로 함
 -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는 수도권 각 지역의 거점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자립성이 강한 지역을 형성하여, 상호 기능분담 및 연계·교류가 가능한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로 재편
 - 대도시 리노베이션은 동경도시권을 5개의 하위 지역으로 재편하여 '국

제환경문화도시권'을 형성

- 수도권관리정책방안으로 다핵다권역형 지역구조 구축, 업무 핵도시 육성, 중앙행정기관이전 등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3. 효과 및 시사점

- 일본이 수도권 관리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그린벨트 구상이 도시근교 농가의 반대로 좌절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상실한 것임
- 지방분산정책도 산업 및 개별 기업의 입지를 사후 추인 하는 정도에 머무른 채, 일본의 산업구조변화와 국제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 한데 기인
 - 정책이념과 수단이 시기에 따라 성장과 균형이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목표 사이에서 흔들림
 - 정책수단도 세금감면과 산업기반 정비라는 비효율적 수단에 의존하여, 수도권이 가진 집적이익을 극복하지 못함
-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린벨트라고 하는 수도권 관리의 직접적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지방의 입지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성장과 균형, 집중과 분산이라는 지역정책의 양대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

제5장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효율적
추진방안**

제5장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패러다임 전환

□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모든 지역을 각자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창조

□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구분	전통적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개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량적 성장• 효율성 추구• 국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질 향상• 형평성 추구• 지역발전
지역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적 구분•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공간적 차별성 · 획일성• 지역의 국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면적 구분• 지역구조의 다양성• 공간적 정체성 · 복합성• 지역의 광역화
조직 /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향적 집권화• 중앙정부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향적 분권화• 중앙과 지방간 협력
자원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일적 지역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내생적 자원 동원
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 물질 중심• 양적 성장• 제조업 중심• 대형 프로젝트 중심• 대기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 기술, 문화 중심• 질적 성장• 서비스 및 부문간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대기업 - 중소기업간 협력

제2절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1.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 역량의 극대화 : 세계화에 대응한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강화
- 기회의 형평화 : 사후 처방적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전환
- 추진의 자율화 : 분권·분산·분업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

2.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분권화전략과 정책과제

- 중앙집중화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내생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재정 권한의 독자성을 확보
- 분권화전략의 정책과제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재정자주권의 확보
 - 자방자치역량과 자율성 제고

□ 분산화전략과 정책과제

-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결정권, 우수한 인적자원, 기초 SOC 및 인프라 등 내생적 발전의 핵심적 요소를 지방으로 재배치시켜 균형발전의 사전적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 분산화전략의 정책과제
 -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 지방인적자원개발과 우수인력유치
 - 기초SOC 및 인프라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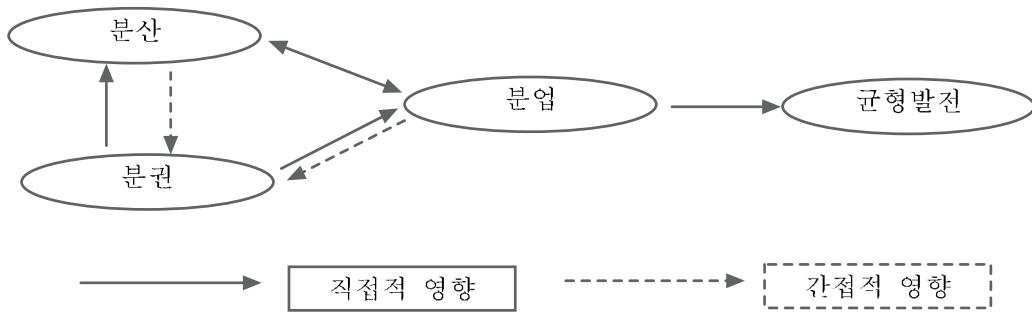
□ 분업화전략과 정책과제

- 독자적 권한확보와 사전균등적 기회부여에 기초하여 지방의 보유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특성화 혹은 공간기능의 전문화 개발을 추구
- 분업화전략의 정책과제
 -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 지방금융의 활성화
 - 지방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지방유통업의 활성화
 -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3.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간 상호관계

- 분권·분산·분업전략은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쌍방향 혹은 일방향의 영향관계가 존재함

<그림 5-1> 분권·분업·분산전략간 상호관계



- 三分전략은 각기 별개로 추진되어서는 균형발전의 효과가 크게 유발되지 못함으로 통합적 혹은 계기적(繼起的)추진을 통하여 상호보완성을 확대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함

제3절 지역균형발전의 세부추진방안

1. 분권화 추진방안

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 기본방향

- 중앙행정권한의 급속한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 능력 함양에 따라 점진적, 단계별 이양을 추진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사무를 우선적으로 선정, 단기에 실질적인 균형발전효과를 기대
 - 단위사무보다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사무를 통합하여 이양하되, 수행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수단을 병행하여 이양

2) 단기방안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운영내실화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절차를 개선
 - 지역경제, 지역개발, 복지증진 및 주민안전 관련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권한을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의결함
- 종적인 심의방법(즉, 행정분야별 과제를 선별하고 여기에 대해 개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해 가는 방법)을 지양하고 유관성 있는 사무를 동시에 이양할 수 있도록 각 행정분야에 공통적이고, 획일화되어 있는 제도적

과제들의 횡적 검토방식을 병행

□ 「지방자치단체의 長등의 협의체」의 권한 및 기능강화

- 국회나 행정부가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이익과 직결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정책결정, 예산배분, 입법을 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사전 이익대변, 의견개진 및 협의조정을 의무화하고, 의견제출시 정부의 응답의무를 부과

□ 「지방분권추진계획」의 작성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체의 선정과 구성, 주요 검토대상 및 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수립
 -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기준설정, 지방이양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견을 수렴 후 계획에 반영

3) 중장기방안

□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이양대상사무의 수행경비 및 사업비등 관련재원의 지방이양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

-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수행되는 지방적 업무와 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자치단체로 우선 이관시켜 일원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자치단체가 전문역량을 구비하기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로 존치※ 우선 이관대상기능: 도로관리, 중소기업육성, 노동, 보훈행정 등

나. 지방재정자주권의 확보

1) 기본방향

-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은 관련부처간 의견대립이 첨예함으로 현재의 재정운영시스템 아래서 재정력을 보강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단기방안

□ 지역개발세의 인상

- 자체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세목가운데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개발세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상
 - 법정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자체를 인상하거나, 탄력세율을 최고 50% 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 법개정을 통하여 지역의 잠재세원을 파악·발굴하여 과세대상에 새로이 포함

□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성화

- 현재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국고보조금 운영체계를 재정취약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을 촉진하고 지방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정력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
 - 전국 자치단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단체위임 성격이 강한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용 실시

□ 탄력세율제도의 적용확대

- 현재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하는 탄력세율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활용할 경우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역(逆)인센티브로 작용
-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세율을 초과한 징수부문은 기준재정수요액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투자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차등지원제도 도입

- 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기본행정수요 측정항목(19개)에 지역낙후도를 감안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낙후지역의 교부세지원을 강화
- 지방양여금사업의 경우에도 지방비부담의 획일적 적용을 지양하고 재정력에 따라 차별 적용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

□ 비수도권 지방세감면분의 정부 보전

-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기업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세감면제도를 인센티브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의 적용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

3) 중장기방안

□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 국세의 지방세이양과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 세제를 개편함
 - 지방소비세의 도입
 - 기존의 부가가치세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비교적 고른 유통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지방소비세화를 추진하며, 특히, 지방주행세는 지방소비세의 여러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대상에 해당
 - 지방소득세의 도입
 -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에 소득세의 10%와 농지세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

□ 법정외세제도의 도입

- 자치단체가 지역적합 신(新)세원 예를 들면, 관광세, 광고세, 입도세, 환경세, 지역개발세(별크화물, 내륙컨테이너 등)등의 세목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세율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 의 도입

-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국비보조금 운영시스템을 사업분야별로 총액지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실정과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을 배분
 - 각종 영세보조사업이나 유사성격의 보조사업을 중단위사업 중심 예를 들면, 도로, 공공시설, 복지시설, 생활개선, 농업기반확충 등으로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배분한 뒤, 자치단체가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우선사업에 집중투자

다. 지방자치역량과 자율성 제고

1) 기본방향

- 자치행정이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자치행정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국가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특히,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찰업무와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교육업무를 이양하여 자치역량과 자치행정의 종합성을 제고

2) 단기방안

□ 주민참여의 활성화

- 주민소환제의 도입
 - 주민대표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

- 주민투표제의 도입
 - 지방의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투표제를 『주민투표법』 제정을 통해 적극 활용
-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접촉을 통하여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옴부즈만제도를 지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 집행기관의 자치행정역량 제고

-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 인력, 교육·훈련 등 의 분야에서 자율성을 강화
 - 행정기구 편성과 공무원 정원과 직급을 정할 수 있는 자율권 부여
 - 공무원 총비용제 도입 검토
 - 지방공무원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자율적 편성·시행과 참여식 교육훈련 강화

3) 중장기방안

□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완전통합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분리형 교육자치제를 자치단체장이 철학과 책임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교육현장 또는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개편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일원화
 - 현행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원화된 지방교육사무에 대한 의결기능을 일원화하고 교육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

- 일반행정기관과 중복되는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통폐합하고, 직접적인 교육지원기능은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교육감 전속으로 하여 중복 조직 및 인력을 재정비 함
- 교육의 지방분권화 강화
 - 집행사무는 지방에 이양함과 동시에 중앙은 지도, 지원,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하여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기능간의 연계를 원활히 함

□ 절충형 자치경찰제도 도입

-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 국가사무적 성격과 지방사무적 성격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경찰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도경찰에 위임하여 수행
- 자치경찰제는 경찰행정의 광역성과 유기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시도단위로 자치경찰기관을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자율적 수행
 - 광역사건, 사고와 대규모 집회시위, 대간첩작전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시도경찰청의 상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조정토록 함
- 지방정치가의 영향을 방지하고,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 시도경찰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경찰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타 지역과 공조체제를 통하여 국가적 사무에 대응하는 협력체제 유지
 - 시도경찰위원회는 지방경찰조직, 직무의 종류 등 지방적 경찰업무를 심의 의결함

2. 분산화 추진방안

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1) 기본방향

- 국가내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산을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염연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불가피함
 - 특히 수도권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신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은 정책효율성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관련 기관, 교육기관, 민간 중추기능의 이전도 함께 검토

2) 단기방안

□ 「국가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수립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기획단」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기획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수도권 소재기관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필요성 및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 국가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은 신행정수도 일대로 하되 일부 공공기관들의 전국적 분산방안을 검토

□ 공공기관의 이전 및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 국가공공기관의 신행정수도 및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이전 대상지역의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방정착 종사자에 대해 이전보조금과 주택구입금 융자 등 경제적 지원 병행

□ 지방이전 민간중추관리기능의 통합인센티브(package incentives)제공

- 민간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대상지역의 일정구역을 「이전지구」로 지정하여 통합인센티브를 제공
 - 지방이전 기업본사와 금융기관에 대해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개발권, 조세감면, 저리정책금융 등을 패키지형태로 동시에 제공

3) 중장기방안

□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

- 중앙부처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의 골격이 갖추어 지면 이어서 정부부속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을 이전
 - 민간연구소,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의 입지촉진을 위해 「이전지구」를 조성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수도권 명문대의 신행정수도 유치

- 신행정수도 조성의 정책효율성을 높이고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명문대의 이전이나 분교를 설치
 - 대학이전의 경우에 부지매입·조성 및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대학촌 주위로 첨단지식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대학·산업복합지구 육성을 검토

나. 지방인적자원 개발과 우수인력 유치

1) 기본방향

- 지방대학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대학특성화를 실현하여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감소시키고 첨단기업의 지방입지와 정착을 지원
- 지방 실업계 및 인문계 고교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입시를 위한 수도권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지방 우수고교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지방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함
- 부부취업가구의 지방 중소도시 정착과 잠재인력 활용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데이캐어제도 도입, 공공보육원 등 자녀교육 지원을 강화

2) 단기방안

□ 지방 국립대 경쟁력향상을 위한 우수입학생 지원 : 「지역인재장학금」제도 도입

- 우수학생 유치로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대학교육을 위한 수도권 유입의 완화와 지방 저소득층의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
 - 지방국립대 우수신입생(정원의 10% 이내): 입학금과 4년간 등록금의

전액을 학기별로 지급하되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는 제외

- 국립전문대 우수입학생(입학성적 10% 이내): 입학금과 2년간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혹은 입학성적 20%내 우수 입학생에게 반액 지원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특성화 및 이공계대학 지원

- 지역대학의 학과(學科) 편재를 지역산업의 요구에 일치시키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지역산업체제와 연계를 강화
 - 지역대학에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의 신·증설(대학원 포함)시에 우선인가 및 지원
- 지방공사립대학 이공계(의대, 한의대, 약대 제외) 우수입학생(10% 이내): 4년간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

□ 지방실업고 우수입학생 지원

- 지방 실업고에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교육수준의 향상과 지역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인구와 교육비용의 수도권 유입을 감소
 - 지방(비수도권) 실업고 우수신입생(입학성적 20% 이내): 입학금과 3년 간 수업료 전액 면제

□ 지방 중소도시 초등학교의 데이케어(Daycare) 제도 우선 도입

- 비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의 데이케어제도를 중소도시에 우선 도입하고 부부취업가구의 지방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의 지방분산과 장기적으로 산업시설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유도
- 동시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와 여성의 결혼후 취업과 전문직 진출 등 사회참여에도 대처

□ 지방 소도시 보육원의 지원 확대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에 대처하고 부부취업 가구의 지방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육원제도를 도입
 -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지방 소도시(읍)의 공공 보육시설 운영을 우선 지원, 지방 사설보육원에도 보육 아동수에 따라서 국고지원
 - 읍 인구당 연 5만원씩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

3) 중장기방안

□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지방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지방대학 중심체제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우수학생 양성과 우수교수 유치를 행·재정적으로 지원
- 정부교육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대학에 지원하며, 권역내 대학간 협력체제를 활성화시켜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체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정착을 유도

□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생 채용총비율제」의 한시적 도입

- 국가공공기관의 인력채용시에 일정비율(예를 들면 30%)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충원하는 채용총비율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지방대 졸업생들의 사기진작과 취업문제를 해결

□ 지방고교의 자유경쟁 입시제도 확대

-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고교평준화정책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자유경쟁 입시방식을 확대하여, 지방 명문고 부활로 중고교 교육을 위한 수도권 인구유입을 차단

다. 기초SOC 및 인프라의 확충

1) 기본방향

-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체계를 개선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간 횡적 연결과 대도시권 환상교통망 확충, 항공물류공항의 중부권 유치 등을 통해 지방의 교통인프라를 재구축
- 정보접근성이 제약된 지역 및 주민의 정보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교육의 확산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 복잡다기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지역별로 통합·재정비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의 연구, 정보제공 및 기술개발을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재원운용을 합리화

2) 단기방안

□ 비수도권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도로사업 강화

- 지방양여금에 의한 그간의 지방도로사업이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단순한 포장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향후에는 혼잡도개선, 접근성 및 안전성제고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함
 - 지방도로사업의 배분기준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되, 특히 낙후지역개발의 거점이 되는 군청 소재지 소도읍의 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 지원

□ 비수도권 산업단지 및 관광·문화단지 연계 인프라구축 우선지원

- 지방도로사업시 비수도권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복합단지 등)와 관광·문화단지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로, 상하수도, 공업용수 등의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
 - 국도건설 등 인프라 확충사업 역시 이와 연계시켜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파급효과를 확대함

□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의 인프라 개발시 금융지원 강화

-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개발할 경우 중앙단위 자금의 저리 융자를 통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 토록 지원

□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 시행

- 농어촌지역에서 인터넷이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 하드웨어와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함
 - 2005년까지 도서, 어촌, 도시근교 농촌 등 지역특성별로 마을을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또는 지방양여금으로부터 집중 지원
- 정보화시범마을은 낙후지역 위주로 실시하되 지역접근센터가 설립되었거나, 마을단위 자체에서 유사한 시설을 갖춘 지역, 정보화의 의지가 강한 지역, 마을발전을 위한 테마가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 농어촌지역의 정보접근시설 확충

- 정보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료 컴퓨터교육 및 인터넷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 정보센터」를, 농어촌지역의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는 PC 등 정보화활용을 위한 기본장비를 보급하여 「마을 별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접속점(public access point)을 확대, 보급함
 - 정보통신회선비 및 운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여 원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기반 구축

- 인터넷 비즈니스의 산업단지라 할 수 있는 지역공공IDC(Internet Data Center)를 구축하여 지역내 공공부문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정보화를 지원
- 지역의 전략산업 중심지별로 분야별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중소기업 인력을 e-비즈니스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대학 및 정보화 유관기관 등을 중소기업 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

□ 「지역기술개발기금(가칭)」의 설치 · 운영 지원

- 중앙정부의 자금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광역자치 단체가 일정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혁신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
 - 전략산업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우대

3) 중장기방안

□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간 연계 고속도로 지속적 확충

- 비수도권 지역간을 횡단하는 고속도로의 확충을 통해 인적, 물적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지방산업의 연계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 특히, 목포-순천간, 서산-천안간, 청주-상주-안동-영덕간 연계 고속도로의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

□ 지방대도시의 순환고속도로 건설

- 지방대도시의 외곽을 순환하는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통행을 우회 시킴으로써 도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도시 개발을 촉진
 - 지방대도시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이전에 순환고속도로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반도 항공물류 허브공항의 중부권 이전

-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항공수송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항공물류거점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중부권공항으로 이전하여, 항공물류 수송에의 전국적인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지방첨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함

□ 「지역정보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및 기타 정보화관련법상 자치단체 정보화추진 관련조항을 통폐합하고 국가의 특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지역정보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자치단체 전자정부 구축
 - 지역간 정보격차해소 사업(정보화사업마을 조성 등)
 - 자치단체 CIO직제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 운영 등

□ 「지역기술혁신촉진법」의 제정

- 지역의 혁신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혁신역량을 결집 · 제고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촉진을 위한 정부의 행 · 재정지원 등 범지역적 기술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권역별 / 지역별 「지역기술혁신지구」의 조성
 - 기존 지역기술혁신관련 중앙부처 개별사업의 통합적 운영
 - 「지역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 가용재원의 사업별, 주체별 배분과 실적평가

3. 분업화 추진방안

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1) 기본방향

-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집적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등의 입지조건(분양가, 인프라 수준, 입지특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함
-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집적시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한 전략산업을 육성함
 - 특히, 지역적 고유성, 전통성, 자원특성에 기초한 향토산업(지장산업)을 발굴하여 현대적 장소마케팅기법을 접목시켜 소규모 전략사업으로 병행 육성함

2) 단기방안

비수도권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개발시 농지전용 규제완화

-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시 농업진흥지역(개정 법률의 농림지역) 농지의 전용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준농림지(개정 법률의 관리지역)를 주로 이용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입지적 조건이 열악한 반면 분양가격이 높음
- 비수도권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두어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의제 하도록 함(관련 규정: 농지법 제36조)

- 비수도권 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이 완화될 경우,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입지조건 개선으로 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

□ 비수도권 산업단지 및 도시내 공업지역 입지기업에 입주보조금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활성화와 전략산업 집적도모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입지기업에 대한 입주보조금지원(EU, 미국, 대만 등)
- 입주보조금의 지원방식은 사용부지 규모나 임대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특히 전략산업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보조금을 대폭 증액 지원

□ 비수도권 산업단지개발 금융지원 강화

-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나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복합산업단지(전문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중앙단위 자금에서 저리융자
-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과 창업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준농립지 입지로 인한 난개발, 환경오염, 산업네트워크 약화를 방지함

□ 「지역전략산업육성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조례」를 제정
 -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

□ 「관리지역」 제도의 수도권-비수도권 적용 차별화

-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준농립지 등이 관리 지역으로 개편되어 토지이용규제를 받게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늘려 공장설립을 억제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 및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지원하도록 동법의 시행령을 제정

□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 지역의 경제 주체들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지역 대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의회를 결성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들을 검토하고 제언하며,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

3) 중장기방안

□ 지역전략산업 분야 기업유치시 지방세 보조

- 지역전략기업의 유치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납부지방세를 해당기업들에게 반환해주는 지방세보조제도를 전략산업 육성에 적용(일본 토요타시)
- 지방세보조제도는 단기적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나 궁극적으로는 지역고용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세수확대를 초래

□ 「지역전략산업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 지역전략산업으로서 비제조형, 도시형 산업을 선정할 경우 이를 육성하기 위한 공간입지전략은 기개발된 도시의 일정구역이나 재개발지역, 도시내 공지(空地)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현재 유사제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구역, 문화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고 중복되어 이들을 통합한 「지역전략산업진흥지구」 제도를 도입

□ 향토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향토산업육성법』 제정

- 향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향토산업 육성조항 신설
- 『향토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향토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별 잠재자원의 조사·발굴
 - 향토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생산성 제고
 - 향토산업의 토대가 되는 농수산자원 개발
 - 향토산업의 종합적 지원(기술, 정보, 판로개척 등)을 담당할 「지역향토산업진흥센터」 설립
 - 향토산업의 지적재산권 취득 지원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제 등을 포함함

나. 지방금융의 활성화

1) 기본방향

- 지방금융의 위축이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유동성 공급과 기존 금융기관의 지방금융서비스를 강화

- 장기적으로는 지방금융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경쟁력 있는 지역금융기관의 구조개편에 역점을 줌

2) 단기방안

□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 현재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전자 2기관은 중견기업에, 후자는 기본재산 규모와 보증능력을 감안하여 지역 소기업의 소액보증에 특화 시켜 유동성 공급창구로 활용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실적 가운데 지방기업 보증비율을 확대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유동성 확대로 연결시킴

□ 지방 여신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추가확대

- 기존에 총액한도대출을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방기업에 대한 여신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폭을 더욱 확대하여 일선 금융기관이 지방에 여신을 확대도록 유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방의무대출한도비율 도입과 기업지원자금의 지방기업 우대조치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경영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지방 의무대출한도비율을 정하여 현재 50% 내외의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60-70%로 상향조정

-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시 지방공단 입주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지방유망중소기업의 지원규모를 확대

□ 지방우량금융기관에 지자체 금고를 유치, 지역밀착경영 유도

-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지역금융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우량금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지역밀착경영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우대조치

- 지역토착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의 보유자금을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시 우대조치 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재투자를 촉진시킴
 - 자치단체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보완을 통해 지역자본, 특히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자본유치에 관한 우대조치 내용을 포함

3) 중장기방안

□ 전국형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 지방금융권의 의도적 형성을 위해 금융활동 자체가 전국적 기반과 지방적 연고성, 그리고 지역밀착경영을 지향하는 대형 우량금융기관(예를 들면, 조흥은행, 국민은행 등)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 전국형 금융기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과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

□ 금융시스템 효율성제고를 위한 「신용조사 및 평가제도」 도입

- 지역기업 및 가계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조사기관 또는 「지역기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우량 지방중소기업을 발굴
 -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신용평가에 대한 아웃소싱시스템 구축 등 공신력 있는 평가시스템을 확보

□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된 금융서비스(상품) 개발

- 건전한 지역산업 및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내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
 - 지역개발사업, 지방건설산업, 인프라확충과 같은 유망한 지역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금융수요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

다. 지방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1) 기본방향

- 지역문화의 발전을 단순히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적 시혜나 문화인들을 위한 지원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지역산업으로 발전시켜 문화의 생산·재생산간의 연계구조를 확보
 -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의 지역적 결합과 아울러 특정 문화예술분야의 지역적 전문화를 도모
-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문화적 자원, 도시경관, 자연자원을 결합하여 이를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 특히, 도시나 농촌의 경관을 미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미적 쾌

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원으로 활용

2) 단기방안

□ 「문화산업단지」 조성방식을 「문화산업지구」 개발로 전환

- 현행 문화산업단지 조성방식을 문화산업지구 지정·개발방식으로 전환, 도시내 일정구역에 특정 문화산업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들을 집적시켜 문화와 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쟁력 창출 공간으로 활용
 - 문화산업지구내 문화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입주보조금 즉, 일정기간(6개월 혹은 1년) 임대료 지원

□ 「매력있는 고장만들기 사업」 전개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건축 및 조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I사업을 추진하여 고장마다의 개성을 부여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킴
 - 도시미화운동을 도시별로 특색 있게 전개하되, 담장이나 옹벽, 가로변의 지붕 그리고 공단지역의 채색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
 -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
 - 도시의 신시가지 개발시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기능적 배치를 조절하여 상세계획 수준에서 도시개발을 추진
 - 농촌지역에 운치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활경관관리방안을 수립 추진

□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의 활성화

-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소득향상과 인구정착을 지원

- 『농어촌정비법』,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그린투어리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

3) 중장기방안

□ 지역특성에 입각한 다양한 문화·관광권지정과 특성화개발

-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을 7개의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공간 조성
- 그 외 지역특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문화·관광권을 지정하고 특성화개발을 유도
 - 대도시지역의 관광레저공간 확충을 위해 대도시 주변 1-2시간 거리에 휴식, 위락, 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레저공간을 개발
 - 고유한 전통, 역사, 문화유적 등 문화적 특수지역을 종합적인 문화권으로 지정하여 지역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역의 개발
 - 남북협력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과 DMZ 국제평화생태공원의 조성, 제주도 국제 관광자유도시를 조성

□ 지역간 공동 관광·문화 개발사업 촉진 : 「광역관광벨트」의 구축

- 광역적인 관광·문화자원을 연계시켜 개발하기 위해 자치단체간에 공동 관광·문화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정부가 적극 지원
 - 해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서해안 연안관광벨트, 동해안 연안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광역적 개발을 유도
 - 다수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리산, 덕유산, 월악·소백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공동의 광역관광·문화지대 개발

□ 지방중심의 문화·관광행정체제 구축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정책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조직확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민간전문가들의 문화·관광정책 참여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문화·관광정책을 추진
 -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할 경우나 집행시에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

라. 지방유통업의 활성화

1) 기본방향

- 지방 중소유통업체의 재개발을 통한 경영전문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생산물을 직접 지방판매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
- 지역별 전통재래시장을 시장의 내외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대형유통점과 차별화된 상권을 형성하여 경쟁력을 제고

2) 단기방안

□ 지방 중소유통업체의 공동화 및 집단화 유도

- 대형유통점의 지방진출로 지방 중소유통업체의 쇠퇴를 막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업종의 전문화 및 조직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
 - 예컨대,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의 의류·패션전문업체, 경동시장의 약

재상, 성남 모란시장의 전통식품업체 등

- 이를 위해 공동건물 및 지원시설 제공, 공동판매망 구축, 공동브랜드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과감한 세제·금융지원 제공

□ 재래시장 재개발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자치단체별로 재래시장 유형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생존가능성이 높은 재래시장을 선정하여 재개발, 시설현대화 및 상품차별화를 정부차원에서 지원
 - 상품구매와 레저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내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장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건축규제를 완화
- 시장의 업태개념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 상품군만을 취급하는 업종전문시장, 도매기능을 강화한 도매전문시장, 전통을 살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화된 시장 등으로 기능적 특화
 - 대규모 유통시설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예를 들어, 전통민속상품, 할인염가상품, 약재, 먹거리 등)의 특화판매를 유도
 - 시장의 테마화, 색션화를 유도하고 안내판설치, 정찰제와 카드사용을 활성화하며 시장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판매기반을 확대

3) 중장기방안

□ 「지방유통산업현대화기금」의 조성

- 지역별로 대형유통시설의 입점면적 상한을 설정하여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신규 대형유통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함
-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점이 지방 입지 후 발생하는 연간 수익금의 일부(약 10%)를 지역의 전통재래시장 등 지방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 활용

□ 지방진출 대형유통점과 지역 생산업체와의 연계강화

- 대형유통업체의 설립허가시에 지역생산업체의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의 무적으로 구매(할당구매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거나, 가급적 중앙집중식 구매보다 분산식 구매방식을 채택도록 권장

마.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1) 기본방향

-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수요충족의 차원에서 소요경비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지원에 부가하여 별도의 추가재원을 조성하여 특단의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간, 도농간 통합을 실현
 - 이 경우 전국의 모든 마을에 대한 분산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투자의 파급효과가 높은 마을 및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정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 금융상의 각종 지원조치 등이 포함된 새로운 농어촌 주거정책을 개발

2) 단기방안

□ 농촌중심형 소도읍의 중점 개발

-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나치게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농촌지역의 생활권 중심인 소도읍의 육성을 통해 집적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

- 소도읍을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농어촌 정주체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법(2001.1.18 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함
 - 개발잠재력이 높은 거점소도읍을 지역별, 유형별로 매년 일정규모(약 20개 소도읍)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3개년 계획으로 중점투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소도읍육성계획을 자율적이고 독창적으로 수립한 후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상향식 공모제」로 운영
-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소도읍육성사업을 포함시켜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선정된 지역에 「소도읍육성협약」 체결하여 추진

□ 마을단위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

- 투자의 파급효과가 높은 농촌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현행 마을단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
 -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 농진청의 전통테마마을 등 각 부처의 마을단위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개발대상 마을은 공모방식에 의하여 선정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의 정부의존성을 줄이며 주민의 자율적인 개발역량을 제고
 - 주민 스스로 마을의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향식 개발방식을 지향
 - 마을단위 시범사업은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 위주로 포괄지원
 - 우수 개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개발계약을 체결

-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시범사업은 부처간 협의에 따라 통합 추진함으로써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 농어촌의 지역특성형 주거단지개발 촉진

-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한 전원주거단지, 은퇴자 유치를 위한 실버단지, 농어촌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주거단지 등이 신규로 건설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정비
 - 신규단지 조성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농지소유자가 조합을 형성하여 택지개발사업을 가능할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에 농지소유자에 의한 택지조성 근거 및 지원조치 등을 규정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산간부지역(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서 확대하여 정주 한계지역인 면소재지(오지개발 대상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촌중심지 기능을 강화

□ 낙후지역의 향토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개발 촉진

- 낙후지역의 자연경관,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등 향토자산(territorial assets)을 활용하는 특화산업을 육성
 - 각 부처별 마을단위 시범사업의 공모과제 선정을 향토자산의 활용 및 농촌 어메니티증진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경관보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우수경관의 유지조성에 대해 적극 제를 실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연경관 형성 및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적극 권장

3) 중장기방안

□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우대조치

-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열악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정주여건과 소득기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정부지원과 별도로 낙후지역의 특정사업에 대해 중앙단위 자금에서 특별지원
- 낙후지역에 관한 차등적 정부지원을 위해 WTO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력, 지역발전수준 및 지방재정력을 반영하는 낙후도지표를 개발하여 지역별 차등지원
 - 낙후도지표에 따라 전국의 시군을 ①일반지역과 ②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하여 특별지원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우대조치

□ 「특수지역지원법」 제정

-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는 현행 특수낙후지역 관련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특수지역지원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함
 - 오지개발, 도서개발, 접경지역 개발, 탄광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 개발 등 특수낙후지역의 관련제도를 통합 규정
 - 「특수지역지원법」의 제정은 관련 부처의 공동입법으로 추진
- 특수낙후지역개발사업은 현행대로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되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로부터 추가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방안 마련

제4절 세부추진방안별 정부간 역할분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三分전략의 정책과제별 세부적 추진방안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추진 전략	세부추진방안	역할분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부 권 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내실화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 권한 및 기능강화 「지방분권추진계획」 작성 지역개발세 인상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 활성화 탄력세율제도 적용확대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차등지원제도 도입 비수도권 지방세감면분 정부 보전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옴부즈만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기 방 안 분 산 화	「국가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 인센티브 부여 지방이전 민간중추관리기능 통합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장학금」 제도 도입 지역대학 특성화 및 이공계대학 지원 지방실업고 우수입학생 지원 지방중소도시 초등학교 데이케어제도 우선 도입 지방소도시 보육원 지원 확대 비수도권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도로사업 강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및 관광·문화단지 연계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비수도권 자치단체 인프라개발시 금융지원 강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 시행 농어촌지역 정보접근시설 확충 지방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 [지역기술개발기금] 설치·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추진 전략	세부추진방안	역할분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단기방안	분업화	▪ 비수도권 산업단지 개발시 농지전용 규제완화	○	
		▪ 비수도권 산업단지 및 도시내 공업지역 입지기업 입주보조금 지원	○	
		▪ 비수도권 산업단지개발 금융지원 강화	○	○
		▪ 「지역전략산업육성조례」 제정		○
		▪ 「관리지역」 제도 수도권-비수도권 적용 차별화	○	○
		▪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
		▪ 공적 신용보증기관 유동성 공급 확대	○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추가 확대	○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방의무대출한도비율 도입과 기업지원자금 지방기업 우대조치	○	
		▪ 지방우량금융기관의 지자체금고 유치와 지역밀착 경영 유도	○	
		▪ 지역개발 민자유치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우대조치	○	
		▪ 「문화산업단지」 조성방식을 「문화산업지구」 개발로 전환	△	△
		▪ 「매력있는 고장만들기 사업」 전개	△	△
		▪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활성화	△	△
		▪ 지방중소유통업체 공동화 및 집단화 유도	○	
		▪ 재래시장 재개발 및 시설현대화 지원	△	△
		▪ 농촌중심형 소도읍 중심 개발	△	△
		▪ 마을단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
		▪ 농어촌 지역특성형 주거단지개발 촉진	△	△
		▪ 낙후지역 향토문화자산 특화개발 촉진	△	△

구분	추진 전략	세부추진방안	역할분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중장기방안	분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 법정외세제도 도입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 ▪ 절충형 자치경찰제 도입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행정수도 단계적 개발 ▪ 수도권 명문대 신행정수도 유치 ▪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 공공기관 「지방대 졸업생 채용총비율제」 한시적 도입 ▪ 지방고교 자유경쟁입시제도 확대 ▪ 비수도권 지역간 연계고속도로 확충 ▪ 지방대도시 순환고속도로 건설 ▪ 한반도 항공물류 허브공항 중부권 이전 ▪ 『지역정보화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지역기술혁신촉진법』 제정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산업분야 기업유치시 지방세 보조 ▪ 「지역전략산업진흥지구」 제도 도입 ▪ 『향토산업육성법』 제정 ▪ 전국형 금융기관 지방이전 ▪ [신용조사 및 평가제도] 도입 ▪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된 금융서비스(상품) 개발 ▪ 지역특성화 문화·관광권지정과 개발 ▪ 「광역관광벨트」 구축 ▪ 지방중심 문화·관광행정체제 구축 ▪ [지방유통산업현대화기금] 조성 ▪ 지방진출 대형유통점과 지역생산업체와 연계 강화 ▪ 낙후지역 재정지원 우대조치 ▪ [특수지역지원법] 제정 	△ △ ○ ○ ○ ○ △ △ △ ○ ○	△ △
	분업화			

제5절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1. 지역균형발전 계획체계의 구축

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정의와 범위

□ 계획의 정의와 성격

- 지역균형발전계획이란 “수도권과 지방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누적된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창의적 경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의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말함
-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여타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위상이 부여되고,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과 낙후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물적 계획뿐 아니라 권한이양과 재원배분 등 비물적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짐

□ 계획의 종류

- 기본계획: 모든 부문의 개발방안을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수립
- 시행계획: 각 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추진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

□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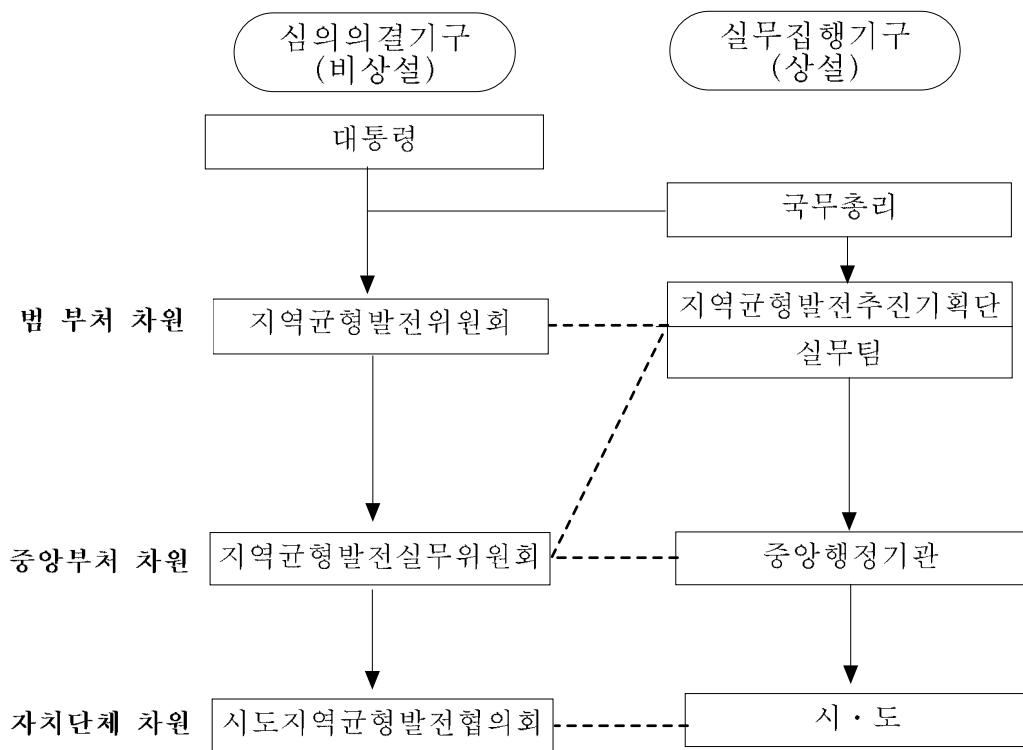
- 계획의 공간범위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대상지역인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지역으로 규정

- 단, 수도권내 낙후지역(경기도 동북부 지역 등)은 현행대로 낙후지역 관련개별법에서 지원
- 계획의 시간범위 및 계획기간
 - 10년간 한시 운영하고 기본계획은 5년 간격, 시행계획은 년차별 수립

나.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 계획추진체계 및 수립

<그림 5-2>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집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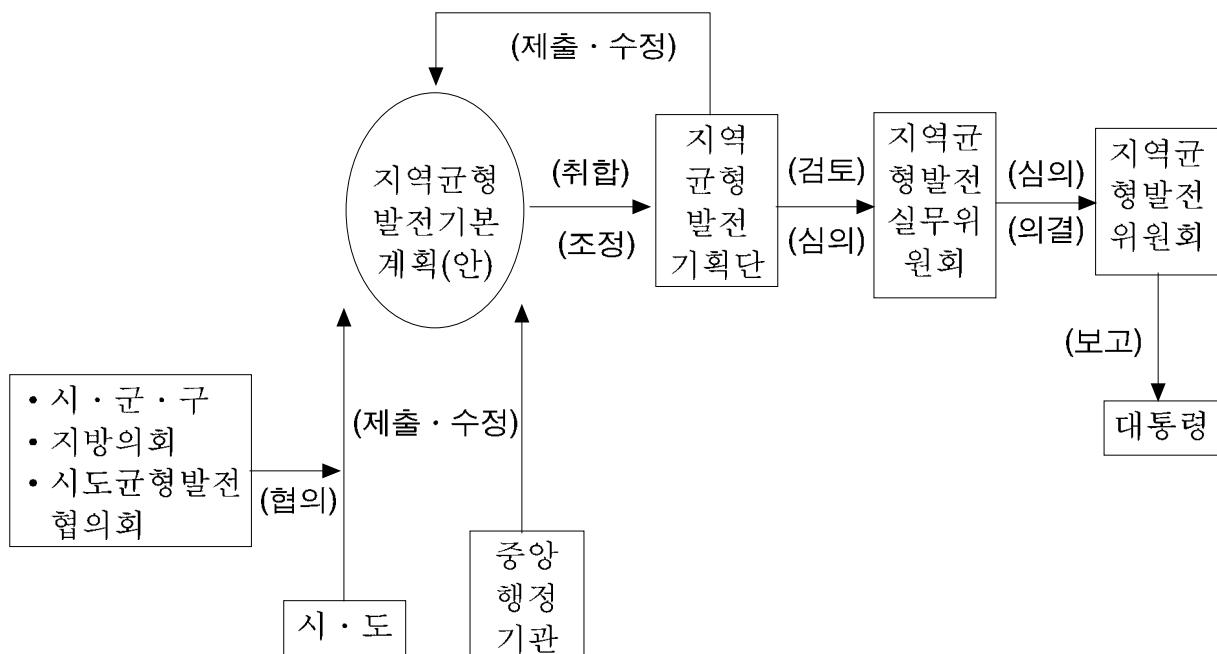


□ 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수립

-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부문별 계획수립지침 개발 · 시달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기획단은 계획안 작성 · 제출
- 기획단의 1차 총괄조정과 실무위원회의 심의 · 검토후 기본계획시안 확정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안 최종심의 · 의결 후 대통령 보고

<그림5-3>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 기본계획 확정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단장은 각각 계획안의 소관 사항 및 시도별 추진사항에 대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당해 연도의 목표 및 추진사업, 재원조달계획, 기대효과, 전년도 추진

실적 및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 심의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확정
- 계획의 공간범위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대상지역인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지역으로 규정
 - 단, 수도권내 낙후지역(경기도 동북부 지역 등)은 현행대로 낙후지역 관련개별법에서 지원
- 계획의 시간범위 및 계획기간
 - 10년간 한시 운영하고 기본계획은 5년 간격, 시행계획은 년차별 수립

□ 계획의 내용

- 중앙 행 · 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자주권의 확보 등
-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 수도권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및 재배치
 -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등 중추관리기능의 이전
 - 교육기관(대학), 문화시설 등의 지방이전 등
- 지방인적자원개발 및 우수인력유치
 - 지방국립대 입학생 지원,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원
 - 지방실업고 입학생 지원, 지방소도시 공공보육원 설립 지원 등
- 기초 SOC 및 인프라의 확충
 - 지방도로사업 확대, 지방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
 -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방의 정보화격차 해소
 - 지방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 지역기술혁신기반 구축 등

- 지역전략산업의 개발
 - 지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부여 등
- 지방금융의 활성화
 - 지방여신의 확대, 중소기업 신용보증 활성화
 - 지방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등
- 지방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문화산업지구 조성, 농촌관광(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 권역별 특화관광개발 촉진 등
- 지방유통업의 활성화
 - 지방유통업체의 공동화, 집단화, 지방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
-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 지방소도읍의 개발 지원, 특수낙후지역 개발 지원
 - 마을단위 시범사업 확대, 낙후지역 특화개발 촉진 등

2. 추진조직의 설치 · 운영

가. 중앙단위의 추진조직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분	세부내용	
목적	· 중앙정부의 범부처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함	
구성	· 위원장을 포함 35인 이내	
	· 소속	대통령 직속
	· 위원장 (1인)	국무총리
	· 부위원장 (2인)	재경부장관,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자
	· 위원 (32인 이내)	관계부처장관, 광역자치단체장, 위촉위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장 등
	· 간사	지역균형발전기획단장
	· 위촉위원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중앙정부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역할 수행 <p><주요 심의 · 의결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각종 제도 신설 및 개선②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전략산업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시책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④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제출한 기본계획(안)과 주요 시책에 관련한 사항⑤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 · 의결할 것을 요청한 사항⑥ 기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역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분	세부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실무적으로 보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함 	
구성	· 소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속 하에 설치
	· 위원장 (1인)	관련부처의 차관 또는 민간전문가
	· 분과	중추기능이전및분권추진위원회:위원장은 포함한 10명 이내 지방산업및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은 포함한 10명 이내 지방인프라및지역개발위원회:위원장은 포함한 10명 이내
	· 인적구성	2급이상의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 인력의 일부는 관련 부처와 시·도로부터 파견을 받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실무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구분	세부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해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구성	기획단장을 포함한 50-60명으로 구성	
	· 소속	국무총리 소속
	· 기획단장 (1인)	국무조정실장 기획단장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자 간사
	· 분과 및 사무국	중추기능이전및분권추진팀 지방산업및교육발전팀 지방인프라및지역개발팀 사무국
	· 인적구성	관련 부처 및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개방형 임용제) 민간 전문가 ※ 현행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관계: 현재 국민경제자문 회의 부설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업무를 해체하여 신설 조직에 흡수함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 관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시책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집행을 관리하는 범정부적 통합실무집행기구 지역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기존 부처별 소관사업 가운데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시행키로 의결한 사업들에 대한 「통합사업시행지침」의 작성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당해사업에 대하여 투자분담 등에 대한 협약체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잠정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의 지원등 	

나. 지방단위의 추진조직

□ 시도지역균형발전협의회

구분	세부내용	
목적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의견을 취합, 조율하고, 지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심의 · 검토	
구성	· 소속	시도지사 직속으로 설치
	· 위원장(1인)	시도지사
	· 부위원장(2인)	시도 행정부지사,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자
	· 위원	관할구역내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시도기획관리실장, 광역의회 의장, 위촉위원 등
	· 간사	시도기획관리실장
	· 위촉위원	7인 이내의 각계 대표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 각계 대표에는 상공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 등을 포함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 · 조정 · 점검 ·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의 균형발전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수렴 ② 지역별 사업수요의 조정 및 협의 ③ 기타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의 협의 등 	

3. 투자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

가.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 기존 부처별 지역균형발전 관련재원의 활용

- 기존 소관부처별 자율적 사업투자와 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중복투자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균형발전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나 투자방향을 사전에 총괄적으로 조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기존 소관부처의 투자사업 외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낙후 지역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적시공급을 위해 중앙단 위에 설치 · 운영
-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수입금
- 기타 결산상 잉여금 등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는 신규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감안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국세총액의 최소한 2%이상이 되어야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보

- 지방사업에 소요되는 자체재원을 조달
 - 재정취약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차등지원
 - 지역개발세의 인상
 - 탄력세율제도의 적용확대
 - 비수도권 지방세감면의 정부 보전 등
- 지방 SOC, 지역정보화 등의 확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양여금의 재원을 안정성과 신장성이 높은 내국세 총액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일정률로 하는 방안을 검토

나. 투자재원 관리운영방안

□ 기존 부처별 투자재원의 총괄 조종 : 「통합사업시행지침」 마련

- 기존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유사투자사업(예, 농림부 정주권개발사업과 행자부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이나, 상호의존적 투자사업(예,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 공항, 항만조성사업과 건교부, 행자부 등 주변연계도로사업)등의 경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가 투자우선순위나 투자방향을 사전조정하여 실질적 균형발전효과를 제고함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이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통합사업시행지침」 을 반드시 마련하여 추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

○ 관리운영주체 선정

- 제1안: 특별회계는 재원조성과 지원대상사업의 범부처적 성격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수행
- 제2안: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재정배분·지원 기능과 지역균형발전 촉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단장과 협의하여 이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수행

○ 지원대상사업 선정

- 기존 부처별 자율적 추진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이나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예산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위원회가 결정(83-84쪽 계획내용 참조)

□ 자금의 배분

○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발전의 정도, 대상사업의 파급효과, 자치단체간 협력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

○ 지역투자협약제도의 도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내용 및 투자분담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계약 체결대상사업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대두될 정책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4. 지역균형발전 관련제도의 개선

□ 수도권규제의 합리화

- 기준과 같이 수도권역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과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공영 구현에 초점을 맞춤
 -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의 과밀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감안한다면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조치는 지방의 자생력이 확보된 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참여와 협력 하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종국적으로 수도권규제의 합리화는 지방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위한 지역간 소득이전정책의 도입과 추진(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징수한 세금의 일정부분을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장기적으로 ‘수도권에는 보다 많은 자율을, 지방에는 보다 많은 지원’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간 소득이전정책의 틀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지

□ 과밀부담금의 확대적용

- 수도권에 신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수도권의 과밀에 의해 발생하는 기반시설수요비용과 낙후지역개발비용에 충당하고 아울러 비용증대에 따른 수도권 입지수요를 감소시키자는 취지임
- 과밀부담금의 부과액수가 지역균형개발에 충당할 수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상징적으로 수도권에서 재원을 만들어 낙후지역개발에 이용한다는

취지와 원인행위자 및 수익당사자의 비용부담원칙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의 확대적용이 바람직

- 서울에서 과밀억제권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규모도 현재의 부과기준(업무시설은 25,000m² 이상, 판매시설은 15,000 m²)을 하향조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

□ 기타 관련제도의 정비

-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의 폐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 중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전액이 본회계로 귀속되고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편입

별첨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 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경제, 문화 등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수도권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 함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오지개발지구
 -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 다.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
 - 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4. "투자협약"이라 함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투자분담 등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차보고등) 정부는 매년 지역균형발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균형발전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지역균형발전등의 촉진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및 시도별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장(이하 "기획단장"이라 함)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등의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중앙 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인적자원 개발 및 인력유치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방의 SOC 및 인프라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지방금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방문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지방유통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낙후지역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균형발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역균형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입안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기획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단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단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역균형발전등에 관한 시책등의 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균형발전등에 관한 시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기관의 지역균형발전등에 관한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단장에게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기획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합사업시행지침의 작성) ①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사업별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획단은 통합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통합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기획단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11조(권한등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권한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인구의 지방분산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국가행정기관과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시책은 기획단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획단장은 지방이전시책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전시책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의 인적자원개발) 정부는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방의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방 실업고 우수 입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3. 지역전략산업과 부합하는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지방국립대 우수 입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등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지원
5. 지방의 유아교육 및 보육사업 지원
6. 기타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역전략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지방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집적화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의 산업단지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
 2. 기업들의 지방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지역내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기타 지방의 지역전략산업육성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지방에 입지하는 기업에게 저렴한 공장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산업단지 개발시에는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를 의제처리한다.
- ③지방에의 기업입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입지기업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입지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 SOC 및 인프라의 확충)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물리적 기초시설을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로, 항만, 철도등의 기초 SOC구축에 관한 사항
2. 정보기반 확충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정부는 침체된 지방의 금융, 문화, 관광, 유통부문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금융의 활성화
2. 지방문화관광산업의 육성
2. 지방유통업의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17조(낙후지역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적 재정지원을 위해 개발수준, 개발수요, 지방재정력등에 관한 낙후도지표를 개발하여 낙후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제18조(구성 및 운영) ①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5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위촉위원 중 호선되는 자 1인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장, 5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장이 겸임한다.

⑥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시책이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도지사가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할 것을 요청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
6.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균형발전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지역균형발전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지역균형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균형발전기획단)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집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의 개발, 보급
2.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4. 통합사업시행지침의 작성
5.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의 지원
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잠정안)
7. 투자협약의 체결
8. 기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기획단은 필요한 인력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다.

⑤ 기획단장은 지역별, 부문별 발전지표를 조사,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⑥ 기획단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기관의 현황등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자료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도지역균형발전협의회) 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지역별 의견을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지역균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가 하고 위원은 관할 행정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과 7인 이내의 각계 대표·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재정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제1안) 혹은 행정자치부(제2안)에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기획단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제1안) 혹은 행정
자치부장관이 기획단장과 협의하여(제2안) 관리·운용한다.

④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의한 과밀부담금중 회계 귀속분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의한 개발부담금중 회계귀속분
4.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수입금
6. 제23조제1항에 의한 일시 차입금
7. 제25조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②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규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내국세총액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

제25조(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제24조제6호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6조(자금의 배분) ① 정부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차등적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수준, 개발수요 및 지방재정력의 정도
 2. 지방자치단체가 2개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효과가 미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특별회계의 자금배분등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사업에 대하여 투자분담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약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지역의 특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협약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

지 아니한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 호,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등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